

October 24, 2024

#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 I. 배경.

2024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은 I.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II. 처벌 수준강화, III. 맞춤형 지원 강화, IV. 피해 확산 방지 구축이라는 4대 중점 추진 전략하에 ①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의 불충족 시에도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② 서면에 의한 기술제공 요구,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NDA) 체결 의무화, 협상종료 후 기술정보 반환·폐기 등 관련 법적의무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③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시 형벌 부과 및 계약 전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보호 및 구제 방안 강화가 강력히 추진됨에 따라 이들과 협업을 계획 또는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2024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전략 1 :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구분		기존	변경 예정 사항
순번	내용		
1	보호범위확대	-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불충족으로 대부분 보호대상 제외	- <u>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불충족 시에도 제도적 지원</u> 방안 마련

2	법적의무 대상 확대	- 수·위탁 거래 관계에만 NDA 체결, 기술요구금지 등 법적의무 부과	- 스타트업과 협상하는 수·위탁 거래의 <u>위탁기업,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양자 관계에 대해 법적의무 부과</u>
3	협상단계 기술요구	- 거래상 지위를 앞세워 내부 핵심기술정보를 구두로 무분별하게 요구	- 요구 목적, 기술의 명칭 및 범위, 비밀유지사항, 대가지급방법,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시하여 반드시 <u>서면 요구</u>
4	협상단계 기술제공	- 기술제공 사실 증명을 위한 서면발급과 NDA 체결 요구 거부 또는 기피	- 기술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 계약위반 시 배상책임 등을 명시하여 <u>NDA 체결 의무화</u>
5	협상종료단계 기술반환·폐기	-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기술정보 반환·폐기 의무가 없어 기술탈취 위험 요소 잔존	-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u>NDA에서 정한 방법 및 일자에 따라 반환·폐기</u>
6	침해행위 유형 신설	- 자기 사용 목적의 침해행위만 처벌	- <u>제 3 자에 대한 부당한 기술제공 및 NDA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기술정보 사용·공개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u>

전략 2 : 처벌 수준강화

구분		기존	변경 예정 사항
순번	내용		
1	제제조치 강화	- 수·위탁 또는 하도급 등 일정 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제외 - 시정권고 불이행 시 공표만 가능	-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u>형벌 부과 가능</u>
2	금전제재 부과	- 별도의 금전적 제재방안 X	- 수·위탁 및 대기업의 중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u>시정명령과는 별도로 금전적 제재 부과 방안 검토</u>
3	손해배상액 현실화	- 제품의 양도·판매에 의한 실손해액만 인정되어 신기술이나 시장진출 전일 경우 적정한 손해 보상 곤란	- <u>제품의 양도·판매에 의한 실손해액과 더불어 기술개발 투입비용도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 개선</u>
4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최대 5 배 배상책임 인정	- 협상·교섭 등 <u>계약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 배 배상책임 인정</u>

			-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고려사항에 비밀유지 위반 여부 반영 검토
5	부처 연계를 통한 통합구제 강화	- 각 부처별 피해구제 수단이 산재	- 중기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범부처가 연계하여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및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

**전략 3 : 맞춤형 지원 강화**

구분		기존	변경 예정 사항
순번	내용		
1	바우처 지원확대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한도 및 보조율 제한	-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금액(추가 최대 1 천만원) 및 보조율(추가 최대 10%) 확대
2	초기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 없음	- NDA 등 계약서 작성 및 독소조항 검토를 위해 예방자문 및 심화 컨설팅 지원
3	기술분쟁 종합지원기관 신설	- 없음	- 기술보호 정책연구, 조사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원 신설 추진

**전략 4 : 피해 확산 방지 구축**

구분		기존	변경 예정 사항
순번	내용		
1	조기대응 체계 구축	- 없음	- 핵심기술 분석 → 정보제공 → 침해 판단 대응까지 지원
2	금지청구권 신설	- 없음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b>기술탈취 행위의 금지 등 금지청구권 신설</b>
3	직권조사제도 도입	- 없음	- 피해신고 범위 확대(피해기업 → 누구든지) - 별도의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도입
4	기술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 없음	-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기술과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을 통한 사실조사와 사전 합의(알선) 등 지원 - 법원 연계 및 소액 등 이견이 적은 사건에 대한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상기 변경 예정 사항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및 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부분으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의 추진일정에 따르면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다만,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완료 및 신설 제도의 시행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II. 기업의 대응방안

위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목하여야 할 사항은 Ⅰ.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Ⅱ. 처벌 수준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들은 기존에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에 대한 규제, 부정경쟁방지법의 아이디어 및 성과 모용의 부정경쟁행위 이슈 외에도 스타트업과 협업 시 기술자료 요청 절차, NDA 계약 내용, 제공받은 기술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추가 입법 또는 규제의 동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업무 진행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1. 기술요청을 위한 서면 및 NDA 계약서 내용 검토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은 협상·교섭 단계에서 스타트업에게 기술을 요구할 경우 ① 기술 요구 목적, ② 기술의 명칭 및 범위, ③ 비밀유지사항, ④ 대가 지급방법, ⑤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기술을 제공받을 때에는 ① 기술 제공 목적 및 범위, ② 비밀유지의무, ③ 계약 위반 시 배상책임, ④ 협상 종료 또는 계약 만료 후 기술정보 반환·폐기 등을 명시한 NDA의 체결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추이 및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항목들이 다양한 기술 거래 및 협업의 유형에 따라 계약관계에 있어 상충될 가능성이 없을지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아울러 "기술요청서면과 NDA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관련 계약관계 등의 체제와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제공받은 기술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협상·교섭 단계에서 제공받은 기술정보는 대개 해당 업무에 관여한 자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이에 기업에서 다양한 부서가 각각의 다른 스타트업과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 각 기술정보의 관리주체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적인 기술정보 관리부서나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시 기업의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관리주체의 부재나 이직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이슈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기업 차원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나 부서 또는 담당자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 및 법령 등의 체계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기업이 계약 및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여 덤으로써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에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기술 탈취 및 침해 전반에 관한 다수의 자문 및 국내·외의 분쟁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 정책은 앞으로 더욱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업들은 보유한 기술의 탈취를 방지하고, 나아가 다른 기업과 협업 시 기술탈취로 오인받지 않도록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기술탈취 관련 국내·외 분쟁 발생 시 대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구성원

### 김지현

변호사

T 02.3404.0180

E [jihyun.kim@bkl.co.kr](mailto:jihyun.kim@bkl.co.kr)

### 강일

변호사

T 02.3404.0689

E [il.kang@bkl.co.kr](mailto:il.kang@bkl.co.kr)

### 이오령

변호사

T 02.3404.0688

E [ohryung.lee@bkl.co.kr](mailto:ohryung.lee@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